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주민등록변경위원회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2개 과를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행정 한류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재난안전담당관”을
“행정 한류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
한다.

제10조제9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5항 중 “제57호까지”를 “제55호까지, 제55호의2, 제56호, 제57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선거의회과·자치법규과”를 “선거의회자
치법규과”로 한다.

제11조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의회과장”을 “선거의회자치법규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2.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3.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4.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5.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폐회 청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6.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7.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9.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20.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제1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0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 개선

제19조제6항 중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으로 한다.

제54조제5호 중 “보건재난대응과”를 “감염병재난대응과, 가축질병재난대응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598”을 “1,5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69”를 “1,56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1”을 “5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5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2”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8”을 “167”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7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
 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수의사무관·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 다
 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2”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2”를 삭
 제하고, 행정주사 “85”를 “84”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0”을 “199”로 하고, 행정
 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
 사 199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
 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임업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임업주사 1 다
 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
 통신주사·시설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1”을 신설하
 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
 신주사·시설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전산주
 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을 “3”으로 하고,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방

송통신주사 “6”을 “5”로 하며, 운전서기보 6 다음에 “시설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1”을 신설하고, 시설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1 다음에 “시설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를 신설하며, “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을 삭제하고, “시설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2”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13”을 “1,611”로 하고, 일반직 계 “1,584”를 “1,58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2”를 “60”으로 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5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시설연구관 · 공업연구관 ·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시설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2”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8”을 “167”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7 다음에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 다음에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시설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2”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 “89”를 “88”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0”을 “199”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99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임업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임업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시설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시설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을 “3”으로 하고,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을 “5”로 하며, 운전서기보 5 다음에 “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1”을 신설하고, 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1 다음에 “시설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를 신설하며, “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을 삭제하고, “시설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2”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1호1)을 삭제하고, 같은 호 2)부터 8)까지를 각각 1)부터 7)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1)을 삭제하고, 같은 호 2)를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00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4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 정책평가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법무담당관 · 정보통계담당관 · <u>행정한류담당관</u> · <u>국제협력담당관</u> 및 <u>재난안전담당관</u>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 ----- ----- ----- <u>행정한류담당관</u> <u>관 및 국제협력담당관</u> ----- ----- ----- -----.
⑦ ~ ⑬ (생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⑭ <u>재난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u><삭 제></u>
1. <u>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주요시설의 재난 관련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작성</u>	
2. <u>부 내 재난안전 및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u>	
3. <u>부 내 정부연습 계획 수립 및 실시</u>	
4. <u>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수립</u>	
5. <u>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 보안 및 방호 활</u>	

<u>동에 대한 지도·감독</u> <u>6. 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u> <u>대 관리</u> <u>7. 부 내 국가지도통신망 관리</u> <u>8. 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관리</u> <u>· 운영</u> <u>9. 재난안전 관련 상황관리반</u> <u>운영 및 상황모니터링·보고</u> <u>· 전파</u> <u>10. 소속·산하기관 재난안전·</u> <u>비상대비 업무 지도·감독</u> <u>11. 재난안전·비상대비 업무</u> <u>대내·외 협력</u> <u>12. 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설</u> <u>치·운영</u> <u>13. 부 내 재난안전·비상대비</u> <u>훈련계획 수립</u>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① ~ ⑧ (생략) ⑨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u>9.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u> <u>제도 개선</u> 10. ~ 20. (생략) ⑩ ~ ⑮ (생략)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10. ~ 20. (현행과 같음) ⑩ ~ ⑮ (현행과 같음)
---	--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④
(생략)

⑤ 지역혁신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57호까지, 제57호의2, 제57호의3 및 제58호부터 제6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보좌한다.

⑥ (생략)

⑦ 지방자치분권실에 자치행정과·주민과·민간협력과·사회통합지원과·공무원단체과·자치분권제도과·자치분권지원과·지방인사제도과·선거의회과·자치법규과·지역사회혁신정책과·지역공동체과·주민참여협업과·지구촌새마을과·지역균형발전과·생활공간정책과 및 주소정책과를 둔다.

⑧ ~ ⑯ (생략)

⑰ 선거의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55호까지,
제55호의2, 제56호, 제57호-----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선거의회자
치법규과-----

-----.

⑧ ~ ⑯ (현행과 같음)

⑰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

1. ~ 8. (현행과 같음)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

<u><신 설></u>	<u>의 연구·개선</u>
<u><신 설></u>	10. <u>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u>
<u><신 설></u>	11. <u>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u>
<u><신 설></u>	12. <u>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u>
<u><신 설></u>	13. <u>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u>
<u><신 설></u>	14. <u>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u>
<u><신 설></u>	15.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u><신 설></u>	16.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u><신 설></u>	17. <u>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운영</u>
<u><신 설></u>	18. <u>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u>
<u><신 설></u>	19. <u>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u>
<u><신 설></u>	20. <u>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u>
⑱ <u>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u>	<u><삭 제></u>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
의 연구·개선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
한 재의·제소 등 지원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4.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5.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6.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7.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
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8.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
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9.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10.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1.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12.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

요한 사항

⑬ (생략)

⑳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4. (생략)

<신 설>

②① ~ ②⑤ (생략)

제19조(재난관리실) ① ~ ⑤ (생략)

⑥ 재난관리실에 재난관리정책과 · 지진방재정책과 · 지진방재관리과 · 재난정보통신과 ·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 재난대응정책과 · 재난대응훈련과 · 자연재난대응과 · 기후재난대응과 · 복구지원과 · 재난구호과 · 재난보험과 및 재난자원관리과를 두며, 재난관리정책과장 · 재난정보통신과장 ·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 · 재난대응정책과장 · 재난대응훈련과장 · 자연재난대응과장 · 기후재난대응과장 · 복구지원과장 · 재난구호과장 · 재난보험과장 및 재난자원관리과장은 각각 부이사관 · 서기관 · 기

⑪ (현행과 같음)

⑳ _____

_____.

1. ~ 24. (현행과 같음)

25.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 개선

㉑ ~ ㉕ (현행과 같음)

제19조(재난관리실)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지진방재정책과장·지진방재관 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u>공업 연구관</u>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 한다. ⑦ ~ ⑱ (생략)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 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 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 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사회재 난대응정책과, 산업교통재난 대응과, <u>보건재난대응과</u>, 환경 재난대응과 및 수습지원과	----- ----- ----- -----<u>공업 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u>----- -----. ⑦ ~ ⑱ (현행과 같음)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감염병재난대응과, 가 축질병재난대응과</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98</u>	• <u>1,596</u>	-2
일반직 계	• • <u>1,569</u>	• • <u>1,567</u>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u>61</u>	• • <u>59</u>	-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5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시설연구 관 · 공업연구관 · 방재안전연구 관 또는 수석전문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시설연구 관 ·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u>	<u>2</u>	<u><삭 제></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8</u>	<u>167</u>	-1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수의사무 관 · 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시설 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u>	<u><신 설></u>	<u>2</u>	+2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시설 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u>	<u>2</u>	<u><삭 제></u>	-2
·	·	·	
·	·	·	
행정주사	<u>85</u>	<u>84</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0</u>	<u>199</u>	-1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또는 임업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시설연구사 · 공업 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u> <u>·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u> <u>송통신주사 · 시설연구사 또는</u> <u>공업연구사</u>	1	<삭 제>	-1
·	·	·	
·	·	·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	3	+2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	5	-1
·	·	·	
·	·	·	
운전서기보	6		
<u>시설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u> <u>방재안전연구관</u>	<신 설>	1	+1
<u>시설연구사 · 공업연구사</u> <u>또는 방재안전연구사</u>	<신 설>	2	+2
<u>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u>	1	<삭 제>	-1
<u>시설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u>	2	<삭 제>	-2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613</u>		<u>1,611</u>	-2	
	.		.		.		
	.		.		.		
일반직 계			<u>1,584</u>		<u>1,582</u>	-2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2</u>		<u>60</u>	-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5				
<u>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 관·공업연구관·방재안전연구 관 또는 수석전문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 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u>			<u>2</u>		<u><삭 제></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8</u>	<u>167</u>	-1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 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시설 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u>	<u><신 설></u>	<u>2</u>	+2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시설 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u>	<u>2</u>	<u><삭 제></u>	-2
·	·	·	
·	·	·	
행정주사	<u>89</u>	<u>88</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0</u>	<u>199</u>	-1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또는 임업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시설연구사 · 공업 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u> <u>·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u> <u>송통신주사 · 시설연구사 또는</u> <u>공업연구사</u>	<u>1</u>	<u><삭 제></u>	-1
·	·	·	
·	·	·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u>1</u>	<u>3</u>	+2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6</u>	<u>5</u>	-1
·	·	·	
·	·	·	
<u>시설연구관 · 공업연구관</u> <u>또는 방재안전연구관</u>	<u><신 설></u>	<u>1</u>	+1
<u>시설연구사 · 공업연구사</u> <u>또는 방재안전연구사</u>	<u><신 설></u>	<u>2</u>	+2
·	·	·	
·	·	·	
운전서기보	5		
<u>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u>	<u>1</u>	<u><삭 제></u>	-1
<u>시설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u>	<u>2</u>	<u><삭 제></u>	-2
·	·	·	

